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반환사유 발생일 | | 반환금액 |
| ⓵ |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| 전액 반환 |
| ⓶ |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| 등록금의 6분의 5 **(입학금제외)** |
| ⓷ |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| 등록금의 3분의 2 **(입학금제외)** |
| ⓸ |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| 등록금의 2분의 1 **(입학금제외)** |
| ⓹ |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| 반환하지 아니함 |

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[대학원] 등록금 반환 신청서 | | | | | |
| 소 속 | 대학원 학과 | | | | |
| 과정구분 | 석사 / 박사 / 석박사통합 | | | | |
| 학 번 |  | | 성 명 | |  |
| 반환사유 | 자퇴, 과오납, 휴학기간경과제적, 기타 ( ) | | | | |
| 연락처 |  | | | | |
| 환불계좌 | ※ 본인 명의의 계좌를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. | | | | |
| 은행명 |  | 예금주 |  | |
| 계좌번호 |  | | | |
| 반환근거 및 반환기준 | ․ 교육부령「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(등록금의 반환)」  ※ ②~④ 기준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의 천원미만액은 절사  ․ 원광대학교 학칙 제65조(등록금의 반환)  ․ 원광대학교 학칙시행규칙 제2조(등록) | | | | |
| 첨부서류 | 자퇴원서사본 (휴학기간경과제적자는 제적증명서) | | | | |
| 본인은 반환근거 및 반환기준을 확인 한 후 상기와 같은 사유로 등록금 반환을 신청합니다.  201 . .  신청인 : (인) | | | | | |
| 원광대학교 관리처장 귀하 | | | | | |